

서울고등법원  
변론준비기일조서

2차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

재판장 판사 박홍우 기일 : 2006. 5. 12. 10:20

판사 이현숙 장소 : 서관 305호

판사 이우철 공개여부 : 공개

법원 사무관 이의봉 고지된 변론기일 : 2006. 5. 26. 17:00

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

원고(항소인) 김명호

출석

피고(피항소인)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웅 출석

재판장 판사

원고의 2006. 4. 13.자 변론의 녹취(속기)신청에 대하여, 이 사건의 경우 녹취를 하여야 할만큼 복잡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 고지

원고

만약 재판내용이 잘못 기재되면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.

재판장 판사

재판은 공개로 진행되고, 원고가 조서를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원고

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.

재판장 판사

현재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습니까.

원 고

예. 소지하고 있습니다.(이때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다.)

재판장 판사

지난 기일에 법정에서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까.

원 고

없습니다.

재판장 판사

원고는 지난 기일 재판진행 사항을 인터넷에 올린 일이 있지요.

원 고

예. 올렸습니다.

재판장 판사

어떤 경위로 올렸습니까.

원 고

그 내용에 대하여 말을 하여야 합니까.

재판장 판사

녹음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어떻게 재판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인터넷에 올렸습니까.

원 고

기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재판장 판사

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.

원 고

어렵躬이 알고 있습니다.

재판장 판사

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하면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.

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요.

원 고

예.

재판장 판사

원고는 이 사건 진행과정을 녹음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녹음을 허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.

재판장 판사

2006. 5. 1. 자 방어방법각하신청은, 먼저 그에 대한 각하신청은 지난 기일에 했어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, 피고가 지난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,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 고지

원 고

피고는 준비명령기간 및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.

재판장 판사

그렇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.

원 고

그러면 피고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을 재판장은 인정합니까.

재판장 판사

그것은 판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.

원 고

2006. 4. 7. 자 및 2006. 4. 21. 자 준비서면 진술

피 고 대리인

2006. 5. 11. 자 준비서면 진술하고, 93년도 1학기부터 95학년도 2학기까지의 성적기록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평가표들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 ( 원고 서증, 증인등 )

변론준비 절차 종결



법원 사무관

이      의      봉



재판장 판사

박      홍      우

